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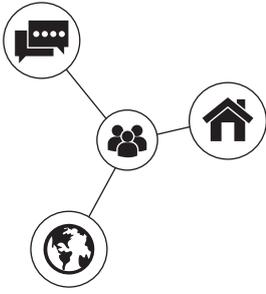
제|주|공|청|회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오후2시

장 소: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 대책위원회(준)
주 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 대책위원회(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공|청|회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오후2시 장 소: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프로그램

좌장: 강종우 제주희망리본본부

일자	프 로 그 램	
10 월 13 일	등록	○ 등록
	인사나눔 (10)	○ 박 원 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김 정 열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장 ○ 강 순 원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격려사(5)	○ 구 성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발제 (40)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입법쟁점 양 동 수 변호사(공익재단법인 동천)
	휴식(10)	
	지정 토론 (60)	- 이 영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 - 고 은 택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 - 김 영 민 (폐가살리기협동조합 대표) - 지 경 호 (제주특별자치도마을기업협의회 전회장) - 서 영 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위 성 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 강 승 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종합 토론 (55)	○ 전체 토론
	폐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공청회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입법쟁점

양동수 변호사 (공익재단법인 동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의의와 입법 쟁점

2014. 10.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양동수 상임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제1장 문제 제기

제1장 문제 제기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요구는 지난 총선, 대선 기간 중의 사회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요 정책 공약 요구 사항이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제정 및 운용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자활기업 육성 정책, 마을기업 육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의 전개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성숙됨.
- 새누리 당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논의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 중이고 2014년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
-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앞서 사회적 경제 조직 주체들이 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과 법안 반영이 필요.

- 이 글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자료로 작성되었음.
 - 이런 점에서 특정한 결론을 주장하고 강조하기보다는 맥락과 쟁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읽혀지길 바람.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합의되길 희망함.
-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한국적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해외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새누리당의 기본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법안을 비교함.
 - 제4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 쟁점을 검토하는 바 기본법의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및 범위, 거버넌스 그리고 지원조치에 대해 검토함.

제2장 사회적경제 기본 법 제정의 필요성

1. 사회적 경제의 의의

- 사회적 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영역
 - 사회적 경제의 구성주체는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 비영리 기업,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자조조직 등
 -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 자선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서 국가와 영리 경제 영역과 대별되는 제3의 경제 영역임.

- 제3섹터라고도 불리는 이 영역의 취업자 규모는 2006년 기준 10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7%에 해당(김혜원 외(2008) 참조).
 - 대분류 기준 산업으로 제3섹터보다 적은 규모의 산업으로는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업 등 많은 산업보다 더 큰 규모임.
 - 2000년대 초중반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확인.
 - 제3섹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보건복지업의 고용규모는 2006-2012년 전체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 1%에 비해 12배 높은 12%로 증가함. 이에 따라 최근의 제3섹터가 차지하는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경제의 경제 원리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미션 지향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참여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사단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함. 이것은 투자 지분에 기초한 주주의 의사결정권 배분이 이루어지는 영리조직과 차이를 보임.
 - 사회적 경제 조직은 투자 지분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이므로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하는 미션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의를 가진 이들이 미션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선의의 경제활동을 수행함.
 -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라도 조합원의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션의 중요성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3.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발전

-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파괴적 영향을 제3의 경제 영역을 통해 순화시켜왔으나 국가 부문의 발달에 따라 제3의 경제 영역은 그 역할을 잃어 갔으나 20세기 후반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함.
 - 경제사적으로 시장경제의 확대가 전통적 경제부문과 전통적 가치를 파괴함에 따라 기업농에 의해 생산기반을 잃게 되는 소농과 해고와 실직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호혜적인 활동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함.
 - 공동구매, 공동판매 활동을 통해 기업농의 공격에 저항한 농업협동조합, 실업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성된 근로자의 상호공제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20세기 복지국가의 발달에 의해 시장경제의 파괴적 영향을 국가 부문이 적극적으로 순화시키고 사회적 경제의 기능을 국가기능으로 흡수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축소됨.
 - 복지국가의 발달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다양한 조직을 필요로 하였고 이들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성장함. 이들 조직의 운영원리는 정부의 원리도 영리기업의 그것도 아닌 호혜성과 미션 지향성의 원리였음.
 - 1970년대 대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가 시작되고 국가 주도성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만개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새로운 발전을 상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임.
 - 1970년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흥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
 -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과 차별화되는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륙 유럽에서 주로 발달한 협동조합과 영미권에서 발달한 비영리조직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었음.
 - 영미권에서는 영리조직과 전통적 비영리조직의 융합이 주목 받았으며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칭함.
 - 1990년대 후반 OECD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발전한 경제 조직으로 승인하고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함을 역설함.

4.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삼중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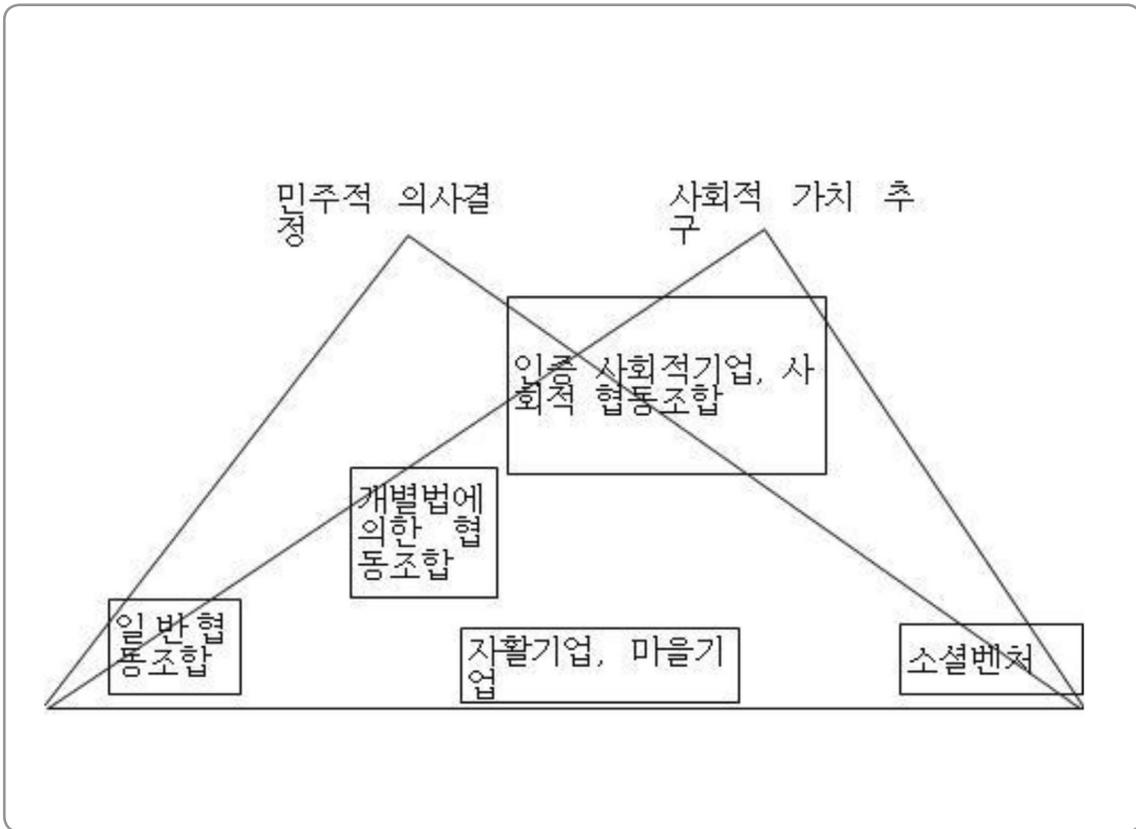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학술 용어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용되었음.
 - 2008년 이전에는 사회적기업 담론이 주도하고 있었음. 2000년 자활공동체와 자활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인 주목을 받고 시민사회에서도 새로운 경향으로 지지 받았음.
 - 2008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기업보다 더 큰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함.
-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해되는 사회적기업이 먼저 발전한 뒤 다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없혀지면서 두 용어 사이의 이해가 불분명한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삼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사회적기업은 가장 넓은 의미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지칭하는 용어.
 - 간접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와 직접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비
- 둘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직.
 -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의 전통적 활동과 조직 구조를 혁신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며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 셋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 내 회원-조합원 중심의 사단법인, 협동조합과 대별되는 자선적 투자자와 사회혁신 경영자 중심의 경영 흐름을 표현.
 - 1인 1표 원리로 대표되는 협동조합과 경영 방식에서 큰 차이를 가짐. 제한되지 않는 사회적 경제의 폭넓은 외연을 상징. 영리기업의 합리적 경영 기법의 적극적 수용 내포.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두 원리인 (1) 사회적 가치 지향과 (2) 인간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각각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두 조직으로 상징됨.

- 두 원리는 and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or로 연결됨. 하나는 활동 목적의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 방식의 가치임.
- 협동조합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도 1인1표의 협동조합적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경영자나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
- 활동 목적의 가치가 좀 더 이해 받기 쉬우므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최정점으로 위치지으는 것이 필요. 이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내의 위계를 구성할 수 있음.



5. 해외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 이 글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참조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사회적 경제법이 개별 조직에 대한 현행 법규를 대체하지 않음을 천명.
 - 하지만 개별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부재하여 해당 조직의 법적 안정성이 불비함을 지적하고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되는 기본 원칙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외연을 개방적으로 규정함.
 - a)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 이 원칙은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영,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영으로 구체화되며, 자본 출자보다 인간 및 단체에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의 기여도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b) 경제활동으로 얻은 결과는 구성원이 수행한 노동과 서비스 혹은 활동에 준해 그리고 조직의 목적인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배분된다.
 - c) 단체의 내부적 연대는 물론 지역 발전, 남녀의 기회 평등, 사회적 결속,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통합,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 개인 및 가족의 삶과 노동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와의 연대를 촉진한다.
 - d) 공공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한다.

- 첫 번째 조항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두 번째는 경제적 성과의 배분 원리, 셋째는 미션 지향성, 넷째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열거됨.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근로자 공동소유기업, 노동통합기업, 특별고용센터, 어업조합, 장애인협회 등
 - 앞에서 열거한 원칙에 따라 특정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특수 단체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리스트는 노동부에 의해 작성되고 공표됨.

-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공익적 과제로 규정함으로써 진흥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진흥 목표를 다음과 같이 열거.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난관을 제거
 -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촉진.
 - 사회적 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진흥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전문교육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을 지원
 - 여성, 청년 및 장기실업자의 적극적 고용정책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참여
 -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의 교육
 - 농촌 개발, 사회통합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촉진

- 스페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다루는 거버넌스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단체 구성요건과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사회적 경제 진흥 위원회임.
 - 대표단체인 연맹, 조직, 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다루는 중앙정부 기관에 대해 대표성을 가짐을 명시.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표성을 가짐.
 -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는 사회적 경제의 부문별 주요 단체 및 대표적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대표들과 노동이민부가 정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저명인사 5명으로 구성되며 자문 및 협의체로서 정부와 사회적 경제 간의 협력, 조정 및 의사소통을 담당.

- 포르투갈은 사회적 경제를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원칙은 스페인과 유사.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배분 원리, 미션 지향성,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특기할 점은 회원, 수혜자 그리고 공중의 이익의 조화의 원칙을 천명하여 회원이나 조합원 위주의 이익 배분과의 차이를 강조.
- 스페인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목록의 작성과 공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적 경제기관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를 작성, 공개함을 명시하여 보다 더 많은 정보 공시를 천명
 - 나아가 국민계정 내에 사회적 경제 계정을 만들고 유지할 것은 천명

- 포르투갈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공공정책의 목적으로 천명
 - 진흥의 세부 목표에 있어서 사회 문제 해결의 혁신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음.
 - 법안에 따르면 “지방, 지역, 국가 또는 모든 지역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과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경제활동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을 하며, 이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지원한다”고 명시
 - 기본법은 사회복지 및 노동 관련 부처에서 관리.
 -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기관을 대표하는 기구와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기관과 그 회원들 간의 투명한 관계를 보장하게 하는 감독 체계를 수립함을 명시하여 투명성 보장을 강조.

-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법의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recognition)하는 것임을 천명.
 -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특기할 점은 사회적 목적의 강조.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에 대해 상세한 부연설명을 후술하고 있음.
 - 사회적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또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을 말하며 특히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복지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특징지을 수 있음.

-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정의는 자산 처분의 제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잉여소득의 배분을 금지하거나 각 구성원이 기업에서 수행한 거래에 비례하여 그 구성원 간에 잉여소득을 배분할 것을 규정함.
 - 여기에 추가하여 기업을 해산할 경우 기업의 잔존재산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으로 양도되어야 함을 규정함. 이것은 영국의 CIC법과 동일함.

-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방자치 관련 부처의 소관 법률이지만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함.
 - 여러 부처의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 기본법 제3장의 정부의 역할 파트에서 정부의 조치와 사업을 개선하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때에 사회적 경제를 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 이는 사회적 경제가 퀘벡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승인해야 하기 때문임.
- 퀘벡 사회경제위원회(Th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및 퀘벡협동조합연합(the 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경우, 정부의 주요 교섭담당기관임.
 - 장관 자문 기관으로서 사회적 경제 협력위원회(The Panel of Social Economy)를 설치함.

- 이상의 세 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회적 경제의 인정(recognition)과 가시성(visibility)을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임.
 -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원칙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원칙은 민주적 의사 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한 배분과 구별되는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임.
 - 협동조합, 재단, 협회 등 다양한 제3섹터 조직을 포괄하고 있음.

- 세 나라 공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와 정책협회의 파트너가 될 대표 조직 또는 조직의 조건을 선언
 - 나아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부 자문과 협의를 맡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을 명시.
- 또한 세 나라 모두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부의 공공정책적 목표로 선언하고 있으며 진흥의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취하여야 함을 명시.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중요한 혁신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 조치나 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하지만 세 나라의 기본법에서 모두 구체적인 진흥 지원기관 설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음.
 - 또한 우선구매나 금융 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음.

- 공통점이 더 많지만 세 나라 사이의 차이점도 존재함.
 - 해당 법률의 주관 기관이 스페인의 경우 노동부가, 퀘벡의 경우 지방자치 관련 부서가, 포르투갈의 경우 사회복지 및 고용 관련 부서가 담당하여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의 규정에서 사회적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음.
 - 퀘벡의 경우 잔여자산 처분의 제한을 선언하여 구성원 사이에서의 처분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해 스페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는 분위 기임.
 - 퀘벡은 사회적 목적 추구를 강조하고 포르투갈은 공익과 조합원의 이익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비해서 스페인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음.

6.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달 궤적과 공통적인 측면을 포함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세계 유례 없는 급속한 고도성장과 국가 중심적 사회경제정책 운용에 의해 전통적 경제 원리는 급속히 해체되고 소농과 근로자의 자발적 대응 역시 억압되었음.
 - 서구에 비해 조합 주도의 사회적 경제는 과소 발전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직들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호혜성과 미션 지향성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었으며 이에 순응하는 행태가 지배.

-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우리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왔고 이와 함께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을 실시해 왔음.
 - 추가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피폐화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국토부의 도시 재생 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됨.
- 기존의 정형화된 국가 사무의 대행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기존의 정부 순응적 인 조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함.
 - 복지부의 자활사업 수행에 따른 자활공동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사업기관, 안행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등임.

○ 이들 조직은 성숙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파트너이자 혁신자로 등장하고 있음.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의 5년의 역사에 더하여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적 참여와 관심이 달라지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 스스로 주체를 의식하고 활동하고 연대하고 있음.
- 이제는 단순히 정부의 사업 수행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과 다른 또 하나의 영역인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체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요구됨.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임시적이거나 경계에 있는 조직이라는 시선에 시달려 왔으나 이제는 그 자체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함.
- 정부 정책 및 사업 관련 법률에 의해 구성되고 정의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 경제 내의 경제 활동과 정부 사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일부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입각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같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실체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정책 사업이 사회적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 운영 하고 있음.
 - 정부 부처가 자기 사업 중심의 폐쇄적 사업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쟁하는 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관료적인 형식적 규칙이 양산되는 결과를 빚게 됨.
 -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으로 설계된 사업의 빈틈과 허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과잉되거나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부처별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만들게 되면 사회적 경제 조직 공통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예산낭비를 낳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에 정부의 정책 사업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진흥의 선언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사업의 거시적인 통합적 조율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음.
 - 이를 지지하는 측은 2011년 청와대 중심의 부처 협의를 통한 사회적 기업 정책의 조율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목적인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방식의 보다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영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과가 통상산업부 내에 설치되었다가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부처와 접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상 직속의 내각부로 이관되었음.
 - 하지만 정책적 조율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수위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선언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차원에서부터 조정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원체계까지 명기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민간 자원의 규모 및 네트워크가 미비하게 발전해 있고 공공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요구가 기본법 제정 논의에 포함됨.
 - 해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진흥 정책에 대한 조항이 기본법에 없으므로 이는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임.
 - 일부에서는 기본법에서 우선구매제도나 금융기금과 관련된 실질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있음.
 - 다른 일부에서는 진흥의 실질적 조치는 기본법 아래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진흥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법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제3장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의 비교

※ 법안비교 표는 각 입법안 간 중복되는 공통사항은 되도록 생략하여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새정치연합 안'의 경우 내용구성에 변경이 있을 예정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수정 초안 반영, 새누리당 안의 경우는 입법 발의안)

1. 목적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안 (이하 새누리당 안)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안 (이하 새정치연합 안)	비교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수단으로 놓고 국가적·사회적 목적에 초점 •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의 국가적 기여를 인정하고, 공통의 법적 토대마련과 효과적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에 초점

2. 정의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①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2조(정의)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p> <p>2.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정의에 광역·지역자활센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지원조직 등을 포함.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별도 정의. • 새정치연합: 정의에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포함하고, 은행금융사업 제외. 사회적가치·사회적금융에 대한 별도 정의. 사회적경제조직·연대조직·중간지원조직·기업 등을 구분하여 정의

2. 정의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p>	<p>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항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2항(농협경제지주회사)와 제134조제3항(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2항(중앙회 출자회사)과 제138조제3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은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 법인, 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p>

2. 정의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③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p> <p>5.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p> <p>6.“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이 법의 제3조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p> <p>나. 이 법의 제3조4호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p> <p>다. 이 법의 제3조5호의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p> <p>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p>

3. 기본원칙(독립성)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제3조(기본원칙) -	<p>제2조(기본원칙)</p> <p>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독립성에 대한 항목 없음 • 새정치연합: 자율성, 독립성, 투명성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연합: 기존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과 사회적금융과 공공구매 등의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

5.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통 중복·유사 항목 생략) - ①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사회적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적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p> <p>7.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p> <p>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p> <p>11.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통합방향</p> <p>③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사회적경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5년 단위로 수립 • 새정치연합: 4년 단위로 수립 • 새누리당 안과 비교하였을 때 새정치연합 안의 기본계획 포함사항이 구체적이고 다양(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역활성화, 사회적성과지표, 교육 등) • 심의 및 승인의 경우, 새누리당 안은 국무회의와 위원회의 심의, 새정치연합 안은 국무회의와 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

4.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통 중복·유사 항목 생략)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p> <p>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p> <p>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p> <p>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p> <p>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p> <p>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적책임조달에 관한 사항</p> <p>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p> <p>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p> <p>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p> <p>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6. 의견제시 및 협의·조정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p>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정치연합: 정부 또는 지역 간 협의·조정 및 의견 제시

7.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통 중복항목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p>	<p>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u>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u>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u>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u>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u>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u> ⑤ 그 밖에 <u>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누리당: 다른 계획을 포괄적으로 기술 새정치연합: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산업발전전망·고용정책기본계획·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공정거래 등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8. 사회적경제위원회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①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심의 6.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p>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p> <p>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연합에서 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심의·조정 사항(정책이행방안, 재원조달과 편성운영, 진흥원 사업의 점검·평가·개선, 지휘·감독 등) 명시

8. 사회적경제위원회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사회적경제 의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부처간, 중앙·지역간, 사회적경제조직간, 민·관사이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효용성 및 국가공동체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등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위원장 1인(민간), 부위원장 1인(기재부장관), 30인 이내(민간 또는 전문가 1/2 이상), 분야별 소위원회, 기재부에 사무국 설치

9. 위원회의 구성 등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p> <p>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p> <p>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p> <p>나.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약간명</p> <p>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지역·부문·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p> <p>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p> <p>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치연합: 위원장 2인(민간·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없음, 민·관 상임위원 각 1인, 40인 이내(민간 또는 전문가 1/2 이상), 1회 연임 가능, 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 기재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경제과 설치, 소위원회·사무처·전문위원, 사무처에 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9. 위원회의 구성 등 - ③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둔다.</p>	<p>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⑨ "위원회"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p> <p>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p>

9. 위원회의 구성 등 - ④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제17조(실무위원회 등)</p> <p>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상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한다</p> <p>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⑤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10.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공통 중복항목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 12조(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p> <p>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p> <p>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 명</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설치 근거 마련, 구성 등은 조례 제정으로 위임 • 새정치연합: 위원장은 지자체장 및 민간위원 공동, 민간위원 1/2 이상(민간, 전문가)

11. 사회적경제조직 협의체 (공통 중복항목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④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등)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p> <p>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p> <p>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협의회, 법인, 근거 마련, 설립·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새정치연합: 연대조직(협의체·연합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법인·단체, 정부·지자체에 제안 및 관련 정책 협의

12.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①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5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④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 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활동 지원</p>	<p>제23조(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④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 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8.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기재부장관 설립·관리·감독, 정부 예산에서 설립·운영 경비 출연, 기재부 소속 공무원의 경제원 출입·감사,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 새정치연합: 기재부 설립·운영·감독(노동부·안행부 협력 및 경비 출연), 개발원 병설 사회적경제 지역혁신센터 설치·운영, 업무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나 개발원 감사 기능 부재

12.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⑨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지도·감독하며, 경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제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 제7호 및 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p> <p>7.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조성 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p> <p>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p> <p>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p> <p>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원” 병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13.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정 (공통 중복항목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6조(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 등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4조(권역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등)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정부는 "권역별 지원센터"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기재부장관이 신청을 받은 법인 중 권역별 통합센터 지정, 기재부장관의 설치·운영 경비 지원, 신청·지정·취소·평가 경제원에 위탁 • 새정치연합: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 지정, 공무원·직원의 파견·협조 요청

14.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①	
새정치연합 안	
<p>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클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 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의 출자·용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용자, 온랜딩, 용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용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4.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②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정부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p> <p>②</p> <p>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p> <p>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중앙발전기금과 지역발전기금을 통칭하여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 새누리당: 정부 기금, 기재부장관 운용·관리, 일부 사무경제원 위탁, 기금 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 근거(조직·운영 대통령령 위임)</p>

14.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③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p> <p>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p> <p>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p> <p>4.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p>	<p>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p> <p>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과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p> <p>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p> <p>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p> <p>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p>	<p>• 새정치연합: 정부·지역발전 기금, 민간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설립, 기재부장관 및 시도지사 운용·관리, 기금 조성 및 관리감독 기재부 담당 - 기금운영 민간사회적금융기관 수행, 투·융자, 사회적금융 제도정비(크라우드펀딩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신협·SE조직 여신 확대 상품개발,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및 공시제도 도입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민간 1/2 이상), 재원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 등 추가, 사회적금융기관의 사회적기업 투·융자 손실 보상 지원</p>

14.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④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p>제19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p> <p>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의 구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p> <p>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p> <p>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4.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공통 중복항목 생략) - ⑤	
새정치연합 안	
<p>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민간기금은 제27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p>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p>	

1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통 중복항목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p>	<p>제3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 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100의 범위에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참여 • 새정치연합: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100의 범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그 외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 사무 위탁, 특별법 제정

16. 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23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p> <p>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민간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p> <p>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p> <p>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p> <p>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재정 지원 • 새정치연합: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부가세 등 감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세제 감액·면제,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투자하는 일반 기업·법인·단체에 혜택

17.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동일 조문 생략)		
새누리당 안	새정치연합 안	비고
<p>제26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p>	<p>제32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3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청년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혁신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등의 정책적·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의 사회적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 • 새정치연합: 사회적성과지표 개발·보급, 청년층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보육 촉진(이외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4장 사회적경제 기본 법의 입법 쟁점

1. 기본법의 역할

1) 기본법의 성격과 규율범위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넘어 '실행법'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나. '기본법'의 의의

- '기본법'은 정책입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매개법률로서, 국가의 가치나 정책의 이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법률임.
- '기본법'은 정책의 지향점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법'에 규정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본용어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 또는 방향,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방법, 타 법률과의 관계 등임.

다. 검토

- 기본법은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개별법 혹은 조례의 근거법률로서 작용하게 되므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특별 법률(ex. 사회적 금융 특별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시켜 실행법적인 내용을 담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역에 대한 부분적인 혜택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지원을 제약하는 법률이 될 위험이 있음. 즉 기본법이 가지는 정책입법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어 유명무실한 기본법이 될 여지가 있음.

- 결국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확인 및 정의와 범위, 국가를 포함하여 각 주체들의 사회적경제에서의 역할과 의무,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추진체계, 거버넌스, 지원의 방향과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목적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목적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나. 내용

-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제명과 함께 법률의 입법취지를 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사회적경제는 공공(公共)의 영역과 교집합이 있지만 영리의 영역과 더불어 독자적인 지위를 가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함.

다. 검토

- 대부분의 법안(아래 법안 비교 참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등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적인 시각에서 사회적경제를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혁신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이 법이 유동적으로 적용 및 활용될 위험이 있음
- 지역발전,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조성 등의 효과는 사회적경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이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그 효과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제정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안비교

<p>새누리당 (유승민) 안</p>	<p>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 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새정치민주연합(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안</p>	<p>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만·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p>	<p>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및 범위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및 범위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조직'의 정의 및 범위는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성 주체들에 대한 확인 및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경제 구성 주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열거규정 방식, 가치규정 방식 등) 검토되어야 함

나. 구체적인 논의 필요사항

-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구별의 필요성
 -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를 하는 조직은 기본법에서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원대상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면서, 지원조직, 중간지원기관, 당사자연합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혹은'조직'의 정의 규정 방식 문제**

-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법률상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그 유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단순열거 방식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이 사실상 구현되고 있지 않는 기존의 유사 사회적경제조직이 그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안으로 편입되거나, 새롭게 출현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 범위 안으로 편입이 쉽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단순한 열거방식보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요건을 기본요건으로 마련하면서 최대한 사회적경제조직 범위를 넓게 열거하는 '혼합적 정의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직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비영리 경제, 공정무역/공유경제, 소셜벤처 등의 포함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본법상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로 포함하되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원칙이나 사회적 가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우에는 기본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현재 사회적경제조직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 **자활센터 등의 경우**

공공부조제도의 전달체계인 자활센터의 이관 부적합성:자활사업의 경우 국가의 공공부조 정책의 일환인 바, 자활사업 전체를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통폐합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활기업에 한해 연계 검토 필요.

그밖에 재정을 공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업계획과 인사권까지 통제 받는 비 자율적 준공공기관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자선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포괄 문제: 복지법인을 모두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규정할 경우,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99%는 이미 사회적경제가 공급하고 있다는 통계적 오류 발생하며, 자칫 복지의 전면적 민영화로 악용되며 시민들의 사회권을 침해할 소지도 내포.

- **비영리 경제, 공정무역/공유경제, 소셜벤처 등**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비영리 경제조직, 공정무역/공유경제 기업, 소셜벤처 등의 경우에는 기본법상의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소결

-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조직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경제기업 혹은 조직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농·축·수·신 협, 새마을금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및 포함하는 경우에도 기본법상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르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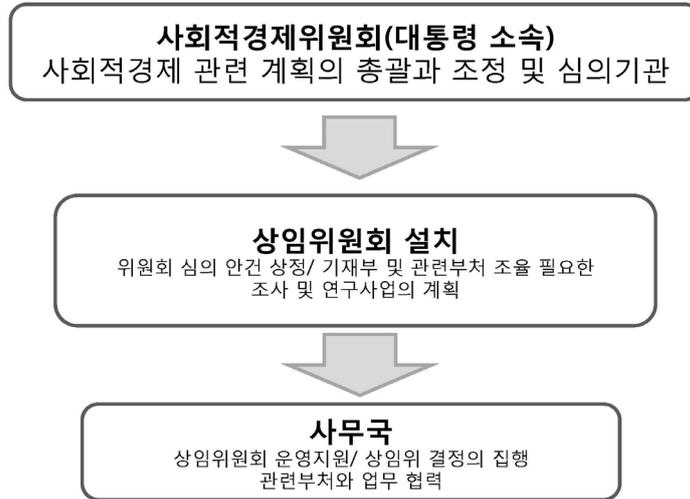
3. 거버넌스 구성체계

1) 거버넌스 기본 구조

가. 관련 법안

<p>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안</p>	<p>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p>
<p>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안</p>	<p>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민·관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하여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과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인준하도록 한다.</p>

나. 조직도



2)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지위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민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역할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검토 필요.
- 또한 예산 수립 및 인사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범주를 확정할 필요 있음.

나. 내용

• 성격 및 역할 : 자문위원회 vs. 심의·조정위원회

-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정부 중앙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기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위원회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자문위원회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직접 정책을 기획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청년위원회와 같은 경우도 있음. 그러나 단순히 자문위원회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을 총괄하고 조정 및 심의 기관으로서 위원회 지위를 확립하여야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을 전담할 행정조직을 처나 청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 규모나 필요성 면에서 시기상조이고, 독립된 위원회나 부처의 형태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구성 : 민관 수평 파트너십 보장

-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행정기관간의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해야 함.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국도 민관 공동으로 설치하고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각각 파견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 등 각 부처 파견자와 이를 관장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함.
- 민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하되 지원조직의 민민 거버넌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협의회, 연합회, 지역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부문별, 지역별로 추천권을 배분하도록 함.

- **조직체계**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을 최소 2인을 두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시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
- **사무국** : 독립적인 실행 사무국을 두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여 특정부처에 예산 편성이나 조율 권한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함.

- **기능과 권한 부여**

- **기능** :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기본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이해관계 조율.
- **권한** : 재정조달방안 수립 및 예산 심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실질적인 권한 행사 가능. 이때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관여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또한 진흥원장 추천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위원회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주체
 -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안 : 이를 위한 실행조직을 갖춰야 함.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조정 권한이 부여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위원회 또는 사무국, 사무처를 두고 조직적 역량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봄.
 - 기재부가 수립하는 방안 : 각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재부가 정책을 통합·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하는 구조. 기재부에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고, 위원회 부의장인 기재부장관이 기재부에서 수립한 계획을 스스로 심의하는 모순적 상황 발생 가능.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지원방향 및 원칙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

나. 내용

- 사회적경제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가지 요소, 즉 시장조성, 인재육성, 금융 생태계 구축을 주축으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함.

금융	시장	인적자원
-기금운용 -사회적금융 특별법 등	-우선구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관련 등	-인재육성 시스템 -협업체 지원 등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고,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며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지원전문가 그룹 등의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장기적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생태계 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지원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원 정책과 방향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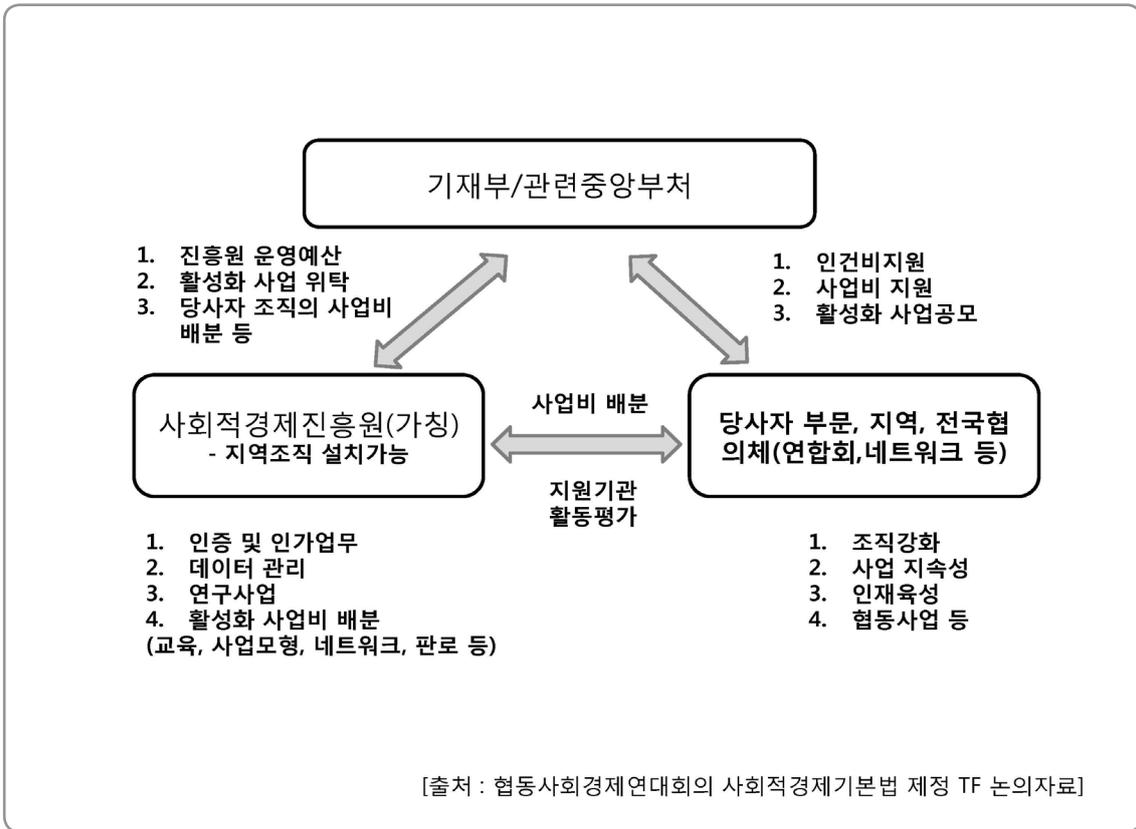
2) 지원시스템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의 각 영역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나. 내용

- 법률에는 통합전달체계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당사자조직에 의한 조직강화 및 사업강화를 위한 자원의 동원이 용이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조직에 해당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들의 지원이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진흥원(가칭)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에 대해 민간이 가지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및 연합회에 일정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의 하도급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진흥원의 지위와 지역조직의 지위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5. 사회적경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1) 사회적경제 기금의 성격

가. 쟁점사항

- 기금의 성격 및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나. 내용

- 기본법 제정이 중앙 부처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금융 혹은 기금을 형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 자금의 흐름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금의 운용이 사업화되어 현장에 대한 고민을 고려하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거나 풀뿌리지역 사회적 금융기관의 운영 역량이 약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발전기금 수준으로 제한.

- 기금의 조성은 기획재정부의 출연 외에도 민간의 기부 및 출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개인의 출연은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적금융기관을 활용하고 기금으로의 출연은 제한.
- 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미소금융, 공동모금회, 한국사회투자 등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외에도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투자 및 용자, 사회적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 민간활동의 촉진 및 중간지원기관 활동 지원 등에도 조성된 재원이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 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활용은 특별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2) 사회적경제 기금 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가. 쟁점사항

- 위원회가 독립성·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나. 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두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또는 기금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일성에 중점을 두어 상임위원회로 같음하는 방안과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기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는바, 기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이 있음.
- 기금 위원회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소속 인원 외에도 금융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소결

- 기금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동위의 별도 조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독립성·자율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살릴 수 있을 것임.

3) 사회적경제 기금 위원회의 기능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 기금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나. 내용

- 사회적경제 기금 위원회에 강력한 기능을 부여한다면 지역 사회적 금융 기관의 운영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전달체계가 관료화되어 실질적인 기금의 전달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기금 위원회는 기금 운영 관련 위탁 기관을 지정하고, 기금과 관련한 배분 기준의 마련 및 운영기관의 선정을 통하여 선정된 운영기관들을 통해 전달체계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기금이 원활히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풀뿌리사회적금융기관이 기금을 모집하고 증개하는 중간조직의 의미를 갖고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풀뿌리 사회적 금융기관의 운영역량의 활용 및 역량 강화를 꾀함.
- 사회적경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기금의 운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결

- 기금 위원회는 기금 운영 관련 위탁 기관을 지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금과 관련한 배분 기준의 마련 및 운영기관의 선정하는 기능을 부여.

6.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사회적경제법안 중 공공구매 관련 조항

<p>새누리당 (유승민) 안</p>	<p>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p>
-----------------------------	---

<p>새정치민주연합(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안</p>	<p>제3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p> <p>④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p>
----------------------------------	---

2) 기본법상 공공구매 내용

가. 쟁점사항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법령의 개정 문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내용

- 공공구매 조항으로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조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임. 즉 단순히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RPP: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을 구현하도록 해야 함.
- 한편 공공구매 조항은 기본적으로 기존 조달계약법의 조항을 개정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일부 보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기존 조달법령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구매 관련해서 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에서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 2013. 12. 19.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
-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이익제기,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3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4)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관련

- 2014. 6. 17. 문재인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개발, 조달 등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적 가치의 실천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소결 - 공공구매 관련 조항 안

제00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책임조달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제2항의 사회책임조달의 원리가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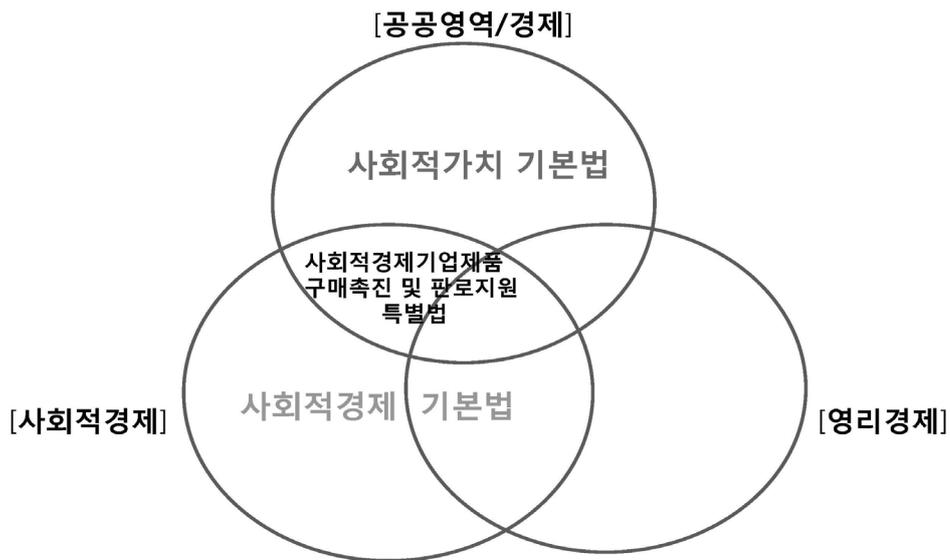
- 1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의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의무를 두고, 2항에서는 공공조달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사회책임조달원리 준수 의무를 두고, 3항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두도록 함으로써, 3항 전단은 현재 발의중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3항 후단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체계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위 법안들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

제5장 맺음말

-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 제정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을 선언함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함.
 - 정책과 사업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원칙에 의해 정의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여 유사 조직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구분을 제시해야 함.
 -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부의 공익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

- 한국의 경우 정부 부처 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육성되어 왔고 그 성격이 강하게 영향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처별 독립적 사업 추진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추진의 주요한 배경이라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기본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정책 조치들이 과연 기본법에 담겨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도 필요함.
 - 구체적 정책 조치들이 기본법에 실리는 것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회의론과 그나마 기본법에 명시되어야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 사업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음.

※ 참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제주공청회

지정토론

이영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

고은택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영민 (폐가살리기협동조합 대표)

지경호 (제주특별자치도마을기업협의회 전회장)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몇가지 제언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장 이영호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총평

- 새누리당이 ‘기본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에 ‘기본법’ 논의를 촉진 시켰다는 점과 ‘기본법(안)’에 파격적인 구상들(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범주에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담는 것, 중앙자활센터 등의 폐지)이 제시되면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 지점들을 확산시켰음.
- 반면에 파격적인만큼 이해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발의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 이로 인해 ‘기본법’ 이라기 보다는 ‘통합법’ (?) 또는 ‘관리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새정치민주연합 ‘기본법’은 새누리당(안)이 발의된 후 제정을 준비함으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시작했다는 점, 발의(안)을 전국 지역순회 공청회 등을 통한 위키이피디아 백과사전 방식으로 만들어 지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 반면에 현재 한국 사회적경제의 당면과제들을 ‘기본법’ (안)에 전부 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기본법’ 이라기 보다는 ‘종합법’ 또는 ‘실행법’에 가깝다는 문제가 보임.
- 종합하면 새누리당(안)이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기본법’에 담은 내용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 주고, 새정치민주연합(안)이 그 내용들을 완성해 간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 ‘기본법’은 기본적 정의, 정책방향,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론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기본법’에 지원방법까지 포함하고자 함으로써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지원방법은 지원방법대로 애매한 결과를 양산할 수 있음.
- 새누리당(안)의 “제3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제2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새정치민주연합(안)의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항들은 기본방향과 원칙만 명시하고 별도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법과 위에서 말한 개별법 또는 특별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든지 또는 ‘기본법’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함.

□ 한국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반영

- 새누리당(안) “제2조 정의”, 새정치민주연합(안) “제3조 정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법률상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조직들을 나열하여 정의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음. 특히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에는 상당한 논쟁이 요구됨.
- 사회적기업은 엄격한 인증절차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에 의해 적절한 확인절차가 있음. 협동

조합 역시 ‘기본법’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새누리당(안) “제3조 기본원칙”, 새정치민주연합(안) “제2조 기본원칙”, “제3조제2항”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필요함.

- 반대로 역동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특성 상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새누리당(안) “제3조 기본원칙”, 새정치민주연합(안) “제2조 기본원칙”, “제3조제2항”에 충실한 비영리 경제조직, 소셜벤처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본법’에 민·관 거버넌스와 지역 결합성의 반영

- 사회적경제는 민간 영역의 자립성, 자발성에 기초하고, 관이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결합할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높고, 올바르게 발전한다는 점과 사회적경제는 지역문제의 혁신적 해결, 지역과의 결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이는 캐나다의 퀘벡주, 스페인의 몬드라곤 등 지역 단위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새누리당(안) “제8조”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제9조”에 있는 지역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명시하여 그에 알맞은 내용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 새누리당(안) “제12조”, 새정치민주연합(안) “제18조” 중 지역위원회 위원에 대해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며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새누리당(안) “제10조” 및 “제12조”, 새정치민주연합(안) “제15조” 및 “제18조”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실행조직을 두어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마련과 집행을 위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새누리당(안) “제15조” 및 “제16조”, 새정치민주연합(안)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지정 권한, 관리·감독 권한 등은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본법 중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 사회적경제 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임.
- 법 체계 상 가능하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대한 기초단위 지자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고은택(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장)

1.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사회복지 인프라를 해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함. 다만, 자활사업을 통해 설립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찬성함.

- ‘조건부수급자 등 참여 대상 제약과 자활·자립 경로의 제시’ 등을 명시한 자활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임. 또한 자활사업의 성과로 설립되는 자활기업은 그 자체로 노동통합기업의 특성이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섭되는 것은 당연함.

- 하지만,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자립 지원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 하의 공적부조 제도이며,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지니지만 명확히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의 중요한 사회복지 인프라임.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를 해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광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는 현재 광역단위 자활사업 육성과 지역자활센터 사업지원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광역, 중앙자활센터를 해체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사회복지 인프라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함.

- 특히 이 연장선에서, 바우처 등 일정 수익사업 영역에 주목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괄하려는 것도 사회복지 사업의 왜곡은 물론 사회복지 영역을 현저히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자활기금을 사회경제발전기금 재원으로 가져가는 데 대해 반대함.

-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재원의 예시로 '자활기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함.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비롯한 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기금이고, 사업 참여자의 노력에 의해 적립되는 기금이므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용도로 편입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실제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를 비롯한 자활진영에서는 중앙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원으로 흡수하려는 주된 목적이 자활기금을 가져가려는 데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도적인 기금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토론과 합의 하에 다양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기본법은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정하고, 예를 들어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지원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있듯이 지원 문제는 개별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추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쉽다는 생각이 있음.

- 현재의 새누리당의 사회경제기본법(안)은 전달체계의 통합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고(기재부->한국사회적경제원->광역단위 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음. 이러한 일원적인 통합체계가 그대로 실현될 경우, 지원과 통제가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지원을 받는 사회경제적 조직은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으로, 지원 의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문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기재부 중심의 전달체계의 통합보다는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행정부문의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실제 현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지침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함.

-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제정 목적임. 하지만, 행정 중심의 ‘통합’이 경직적인 제약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장애인, 여성, 노인, 수급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금융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법들을 조직, 연계하는 기본법으로서 내용을 갖추고, 작지만 활성적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상호 연계, 협력하며 공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임.

영역의 기준을 세워 한곳에 모으는 사회적경제가 아닌 각자의 사회적역할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회적경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폐가살리기협동조합 김영민

1. 사전적의미로 본 사회적경제

사회적 :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또는 그런 것.

경제 :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문화, 주거,,, 모든 분야에서 압축성장을 해왔다는 것은 1차원적인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고 봅니다. 극단적이라는 말을 쉽게 해석해 보면 집요하게 한가지만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집요했으니 목적도 훌륭하게 달성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무엇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우리가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당연히 필요하고 요구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개방형 사회적경제를 꿈 꿉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ON and OFF 이 겠지요. 온라인네트워크와 오프라인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온라인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순간도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와 접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은 지금 이 현장에 못오신 분들이 게시듯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와 더불어 개인적사정, 목적, 성격에 따라서 참석치 못하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사람들의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빠르고 높은 기술들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그러한 것이 아닌지? 또다른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한곳에 모이기 위한 기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사회적역할을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3. 지수(INDEX)개발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경제지수가 무형자산으로 표현되거나 가치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시행이 된다는 가정에 다양한

사회적역할에 대한 지수가 곧 개별노력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개별노력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닌, 사회적역할을 하기 위한 각자의 개별지수평가서를 통해서 사회적역할의 계획하고 목표하고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4. 사회적경제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지 정 토 론

지경호 (제주특별자치도마을기업협의회 전회장)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미래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1.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참여자의 ‘상호 이익 극대화’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은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빈부격차 완화 등의 수단으로 가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국가와 독점적 성격의 시장이 충족하지 못하는 필요(needs)를 제공하는 비시장적이며 참여적인 삶의 양식이다. 삶의 양식은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협동하는 삶의 윤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2. 발표문은 시장경제의 파괴적 영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와 1970년대 불황이 초래한 재정위기로부터 곧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만개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전개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1970년대 불황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쟁점은 시장 원리의 전면적 복원인가 민주주의의 강화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으며 정치투쟁에서 승리한 전자의 입장은 시장을 통한 성장과 번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였으며 성장과 번영의 유토피아는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이익공동체를 형성한 상위 1%의 유토피아였을 뿐이었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노동윤리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연대의 정신마저도 갉아먹어 버렸다. 복지국가의 후퇴는 곧 국가(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합적 소비의 공공성을 소리 높여 외쳤던)가 앞장서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고 공공부분을 허무는 과정이기도 했다. 복지국가의 타협을 성취했던 유럽의 정당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시장주의에 투항하고 만다. 신자유주의 30년이 몰고 온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유대의 붕괴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마저도 막혀 버린 것이다. 복지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나 복지병을 걸렸다고 지탄받았던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치적 해결통로는 완전히 봉쇄되어 버렸다.
무한경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장윤리와 그것에 따르는 스트레스, 그리고 중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 우리 삶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사회적 경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열망’이다.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장에 저항하고 싶은,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지만 시장논리에 의해서 잠식되었던 공동체 흔적에 기대고 싶은 열망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지금의 체제를 보완하거나 제3섹터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사회적 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성공 사례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공 사례보다 실패사례들이 훨씬 많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지만 18세기에 시작된 노동자들의 우애조합, 노동자협동조합, 20세기 중반에 시도되었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등을 모두 포함시키더라도 성공은 극히 예외적이다.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좌파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말뿐이지만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이 대두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주의와 우승열패의 경쟁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관료, 정치인, 기업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입법화하겠다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 보인다. 사회적 경제 논의의 전제인 시장경제의 파괴적 효과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전자를 통해 후자를 순화시킬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로부터 사회적 원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혹시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가 낳은 파괴적 효과를 흡수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사회적 경제는 1990년대 유럽의 중도좌파 정권들이 제시했던 ‘제3의 길’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이들은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로 변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수정당들과의 공감대를 넓혀 주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다면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공부분의 사유화, 공적 영역을 사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새로운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초래된 사회적 비용(빈부격차, 사회적 서비스의 황폐화)의 책임을 공동체로 전가하려는 시도였다.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중도적인 평등의 가치와 우파적인 상품-화폐의 원리를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봉합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시장맹신주의로부터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와 관료들이 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5.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 지금과 같이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간의 본성마저도 침해하는 체제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이해 프로젝트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국가운영 방향의 수정 없는 논의는 공허하다는 것이다. 1981-6년까지 존재했던 광역런던시의회는 이러한 전환에 많은 교훈을 준다.

우선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에 의해 제시되는 획일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가 힘을 키워 지방자치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며 그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위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방자치정부의 사회전환프로젝트는 산업, 노동,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인권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향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사회적 경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의 좋은 정책을 도입하여 그 정신을 발전시키고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형식만 빌어 빈껍데기만의 정책을 만들어 내곤 한다. 참여예산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는 성취될 수 없다.

6.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한국 역사에서 시민의 힘은 민주화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거대한 이윤을 독식하고 있는 지배집단에 저항하고 사회의 방향을 이윤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시민사회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은 풀뿌리에 토대를 두고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이기 보다는 준정당적 질서에 편입된 싱크탱크(think tank) 또는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압력단체에 머물고 있다. 종종 지역의 시민운동은 시민의 정서와는 괴리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운동이 전통적인 사적 연줄망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경제와 시민운동은 시장원리에 저항하면서 국가와도 의식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시장의 원심력에 빨려 들어가면서도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채 사적 연줄망을 통해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 조직운영은 민주주의보다는 관행과 권위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시장의 실패’가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비시장(non-market) 또는 반시장(anti-market)의 싹을 틔우는 것이다.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곧 국가에 종속되는 것이며, 사적 자본과 경쟁을 수용하는 것은 곧 시장에 흡수되는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7. 독점적 시장을 사회적 원리에 부여하고 관료적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는 시민을 정치 주체화함으로써만 성취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사회적경제조직 협의체는 자본과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사회화하고(socializing the market) 국가를 민주화하며(democratizing the state) 주민을 정치 주체화하는 것(empowering the people)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정비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와 운동이 스스로 차이와 이견을 조정하고 시장과의 경쟁을 견뎌내며,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거리두기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지 말아야 한다. 시장과 국가의 논리는 다양성을 질식하고 권력과 화폐로 획일화하는 것이지 않은가?
8. 무한경쟁 원리를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승자독식, 우승열패의 논리를 ‘경쟁력’이라고 숭배하는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학력으로만 평가하고 서열을 강요하는 사회, 앞선 세대가 뒤에 오는 세대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사회, 다음세대를 타자의 고통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도록 길러내는 사회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혹시 ‘사회적’은 자원을 분배받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을 표상하는 말이 되어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사회적 자본은 이익 추구를 위해 사적 연줄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유행이 되고, 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천박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바래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행의(as usual) 체제 아래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실현될 수 없다는 몸의 체험으로부터 생겨나는 저항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주요 쟁점 및 향후 대응 방향

□ 추진 배경

- ◎ 사회적경제의 아젠다와 정책이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혁신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심사로 발전 중
- ◎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형태가 아닌 지역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공동체 개발 형태가 되어야 함.
- ◎ 이를 위해, 여야와 민간 모두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을 둘러싸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새누리당) 당내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14. 1)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계획 발표(14. 2. 12), 공청회(14. 4. 10)를 거쳐 석달여 만인 지난 5월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입법 발의함.
- (새천년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시도 순회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 이와는 별개로 2014. 6. ‘사회적가치기본법’¹⁾(문재인 의원) 입법 발의함.
- (민간)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지역별 순회공청회를 진행 중임.

□ 주요 문제 제기

- ◎ 각 정당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간 조율을 거쳐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 설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함.
- ◎ 사회적경제 분야가 미성숙하고 자생력이 취약함에 따라, 관주도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체계는 지역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해치게 됨에 따라 효율적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주요 쟁점 사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핵심 쟁점	
▼ 사무처 설립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산하에 사회적 경제국 두고 사무국을 기재부에 위탁
새정치연합	- 위원회 산하에 상근 사무국 설치하고 1인의 사무처장 임명
▼ 사업추진기구	
새누리당	- 기재부 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새정치연합	- 기재부·고용노동부가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 설립
▼ 금융 및 기금 설치	
새누리당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운영 사무는 사회적경제원에 위탁
	- 경제원이 촉진과 금융기능 통합 수행
새정치연합	- 사업촉진기능과 사회적 금융기능 분리

자료 : 각당

1) ‘사회적가치기본법(6.17.입법발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사업 등에 대해 비용절감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 전달 체계

- 새누리당은 기재부에 사회적경제원을 두는 단일 총괄 체계를 내놓았고, 새정치연합은 정책개발과 지원을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총괄하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가 진흥원을 공동 운용 방안 마련
- 지원실무를 전담할 사무처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기재부에 사회적경제국을 두고 사무국을 기재부에 위탁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위원회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고 개방형 공무원을 채용 방안 마련

- 관주도의 공적인 지원체계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사업과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통합거버넌스를 강조하다보면 각 지역이나 민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위축되고 조직들이 동형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적 사업 대상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관의 역할 다양성 확보와 유연함이 중요함.

◎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 체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새누리당의 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 운영의 조항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의 근거를 마련
-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구성과 운용, 운영 기관 등은 조문화 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원칙 등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 반면, 새천년민주연합의 법안은 신탁의 제도정비,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신용평가방법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금융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모색을 담고 있음.
- 또한, 사회적금융을 총괄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의설치를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더욱 정책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공적 조달 등 사회적경제 의무구매의 대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며,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고무적임.

- 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의무구매를 하고,
- ②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과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새누리당)의무대상 조직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되어 있음.
- (새천년민주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도 대통령령으로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제주지역의 대응 방향

- ◎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태 조사 및 진단을 통한 기준 마련
 -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과 수행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검토, 실행방안 등 포괄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용역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역할이 중요함.
-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통합적 정책 수행 준비 체계 확립
 -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 사무 체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행영역은 결국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행정 인식 전환과 제고가 시급함.
 - 정부 부처별 정책실행체계에 따라 도청 국 단위로 분산된 산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도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함.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 준비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업 및 활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회의 합의 도출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구조, 시장구조, 공동체 구조 등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시스템 구축 논의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 사회적기본법에 대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 ◎ 지역 현장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충분한 토론,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 ◎ 따라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과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수정을 통해 기본법을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대응 방향도 설계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함.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화에 따른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공동체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로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근거 기반이 미비함
 -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들의 내용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보다 지역화하고, 민간 관련 조직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약한 수준임
 -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전달체계로서만 한정지어 보는 경우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성장 잠재력 제고와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도 민선6기 들어서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정책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경제위원회설치, 종합발전계획수립, 지원센터 설치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장기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와 생태계 기반 구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른 기대

-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간 법적 근거의 미비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발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와 그 근거를 제시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 짐
 -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 지정으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하여 통합 조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 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 증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
-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필요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방자치단체)단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필요함
- 사회적경제는 지역밀착형 공동체 활성화사업임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포함한 민간조직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적 사회적경제모델 모색이 필요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른 과제

○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 명시 필요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과생된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련법령에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는 규정 명시가 반드시 필요

○ 법령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재량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운용,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과 지표도입 방안 등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 필요
- 또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필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제주공청회

부 록

- 제1차 전국(서울) 공청회 종합토론 부분 녹취록
- 강원 공청회 토론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 제1차 전국(서울) 공청회 종합토론 부분 녹취록

8월 11일(월) 오후 3시

□ 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

1.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 공공경제와 시장경제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제3섹터)은 굉장히 크다. 그것을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포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기본법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체기본법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가치만을 지향하는 재단·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가치와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을 같이 추구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체라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컬을 때는 주로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칭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칭하는 단어가 필요하고, 그것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과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경제사업체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비즈니스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문들을 법제화 하는 것이 법제화와 실효성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는가.

2. 기금과 관련되고 사회적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이 한국사회투자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러한 부분은 발제·토론 중에서 이은애 센터장께서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사회적경제공제조합을 제안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통합적인 당사자연합체가 형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한 곳에 모여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법안이 정부가 공적인 자금으로 기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각 지자체 또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서울시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형성되는 펀드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매칭되어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조성되고 형성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이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속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 기본적으로 도매적인 사회적금융이고, 소매적인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소매적인 사회적금융 기관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배상·손해에 관한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사회투자로서 많은 리스크들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의 CDFI 경우에는 평균 5~6%이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10~12%이다. 그것은 배상·손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은애 센터장께서는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이 2%에서 4%로 올렸다고 했는데, 한국사회투자가 중간지원기관에 0%로 대출을 하고, 중간지원기관은 2%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그 2%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면 중간지원기관이 운영비 및 예상되는 배상·손해에 대한 해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4%로 더 높여주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런 리스크 차원의 관리를 위해 4% 인상이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금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과 민간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민간과 지자체 자금이 형성된 사회적금융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라일경 일본 중경대학 교수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하여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오늘 공청회 논점 중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실제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와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만약에 이 논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농·축·수·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하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논점 자체도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닐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당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한국마을기업협회 사무총장

지금 이런 자리가 정말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자리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의 80% 이상이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예상된다, 오늘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기본법이라고 하지 왜 굳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 유진호 청소대안기업연합회 사무국장

한국마을기업협회 사무총장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만일 이 자리에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면, 굉장히 지루해하셨을 것이다. 여야 정당의 지정 토론은 작년과 올해 초에 나왔던 이야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라리 중간지원기관인 금융쪽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하든지,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서울이고 전국에서 처음 하는 공청회니깐 앞으로 지방순회를 하실 때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대표가 애로점들을 가지고서 그러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공청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니면, 중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기업(현장)의 대표들만 모이는 공청회라든지,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이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공청회의 기준도 업을뿐더러, 중간지원기관이나 연구자들을 위한 공청회라면 차라리 그러한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참여자들이 미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올 수 있도록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임태섭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을,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각각의 개별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인증제도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제3의 섹터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틀 안에 존재하려면 또 다른 인준·인증·지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것은 또한 지원에 따른 제제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원과 제제에 대한 내용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들어가는 것 인지도 알고 싶다, 각각의 개별법에서 소관하는 행정부처도 각각 다르다보니 그것을 통합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제약·제제를 위해 관리·감독이 따라야 하는데, 이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한 관리감독이 가중되면 기업은 고충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 드린다.

□ 이홍균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제가 지금 몇 조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이 강조되어 들어간 문항이 존재했지만,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강조된 두 문항 정도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적기업기본법으로 보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또 하나의 규제를 양산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의해서 지나치게 간섭받고 규제받던 것들을 없애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어느 특정 정부부처에 소속되어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자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쪽 부처에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는데, 그러한 불필요성을 없애려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아직 농·축·수·신협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농·축·수·신협이 협동조합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미리 틀을 만들어놓고 강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만일 농·축·수·신협과 사회적경제 범위 포함에 대한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면 그들의 반발과 로비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은 물론, 입법 자체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래서 농·축·수·신협이 설립출발 시점의 목적에 맞도록 그들을 되돌리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 이희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간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직의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했을 때, 보통 기업·법인·단체를 총칭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그에 관한 조직을 이원화시켰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기업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연합회나 중앙회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법은 형식적·윤리적으로 보면 농·축·수·신협도 마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인가조건도 까다롭고,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농협이 세계협동조합연맹에 대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드는 데에 농·축·수·신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고 농·축·수·신협을 사회적경제에서 끌어안지 않는다면 논리상 법안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이 든다.

법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특수법이 있는데, 법체계상 헌법이 제일 우선하는 것이고, 헌법에 따라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기본법은 개별법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틀을 잡아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법들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 위치한다,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역할을 담지는 않고, 원칙·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규범적 가치를 선언하는 선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금융 부분은 우선 사회적금융 전문가와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사회적금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타 법률의 기금(여성의 날 기본법의 발전기금, 방송진흥발전기금, 녹색 발전기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도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하면 대체로 출연인데, 정부·지역에서 문제의식이 많다. 그래서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기금은 이원화시켜 논의 중에 있다. 지방정부 기금은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출연을 하고, 중앙정부 기금은 중앙이 주도로 하는데, 이 관계의 설정 문제가 고민이다. 보통 발전기금은 정부자금도 들어오지만 민간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출연·배분 등에 관하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금융에 관하여 민간기금을 따로 할 수 있도록 마치 사회복지공동모금 형태에서의 다원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내에서 수용되면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현장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최 측의 의도를 설명 하자면, 전국순회 공청회의 시작은 정당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전국을 순회할 때에는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최대의 지역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을 모아서, 마지막에 다시 서울로 다시 왔을 때 사회적경제계의 법안에 대한 요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아쉬웠다.

제가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와 관련한 토론을 들으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나라마다 다른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영국을 주목하여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제3섹터청이나 시민사회청처럼 중앙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을 만들었으니 가장 진보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제도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법이 없다. 사실은 영국의 시민사회청 안에서 자선단체과가 있고 협동조합과가 있고 사회적기업과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시민사회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정책의 프레임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포르투갈·스페인·퀘벡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깐 어떤 나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기본법으로 인하여 공동의 호명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자발적 요구)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부피로 보면 사회복지재단이나 농·축·수·신협 등의 협동조합이 훨씬 비대하다. 하지만 이런 곳들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혁신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사업(정부의 지원과 규제)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왔다.

저는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새로운 협동조합을 꿈꾸는 분들에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에 속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다른(사회적가치, 사회적목적 지향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질적이지만 다함께 모여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호명을 받기원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으로 호명해주기를 요구가 있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 및 정책 고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선단체,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주류를 구상하였고 기존의 덩치 큰 사람들이 이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3섹터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법인, 협회, 농·축·수·신협이 들어갔던 것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기본법에 대한 자문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견해를 밝혀왔다.

결국 각 나라의 사회적경제법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전략에 의해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얘기한다면 원칙은 얘기하되 포괄범위는 굉장히 넓게 하고 섹터 전체를 바꾸는 꿈을 꾸는 법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

오늘 나온 논의에서 특정 부문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와 전략의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고 오늘 사실 이흥균 연구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누리당의 전략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다음 스테이지까지 구상하고 있었다. 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이 법을 통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기본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김혜원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와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다. 사회적경제 자체가 사회적목적·사회적가치·사회혁신성이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 주체 사이에서는 서로 충분한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각자 개별적인 관점의 역사와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대치의 사회적경제 범위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가장 전략적인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기본원칙·이념이나 정의·범주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회적가치

를 추구하는 기업·조직들도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진입하려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자체가 가이드라인만 하는 것(추상적인 위치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추진체계·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대통령령으로 위임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부처가 자신들의 편의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임창규 한국사회투자 사무국장께서 말씀한 내용에 답하자면 저도 그런 고민이 있다. 영국처럼 Charity같은 조직들, 비영리법인들이 당연히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들어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저조차도 대답이 어려울 만큼 고민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부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들이 당연히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조직만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들만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이홍균 연구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 개별법이 결국 기본법에 의해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용들도 아마 많이 바뀌게 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별법들 또는 금융·공공구매 등에 관한 특별법들은 기본법 안에 담아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본법 안에 담아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후에 그것을 다시 또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CDFI법도 충분히 별도의 입법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에 다양한 사회적금융 기관의 육성과 생태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의무 혹은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이 충분하다. 그것을 일일이 사회적기본법 안에 담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축·수·신협 부분으로 인해 정의와 지원이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일단 범주 안에 들어오되 기본법 안에서 규제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하는 부분을 주체들에게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다. 아마 그런 조항들은 거의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원칙을 지키는 지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개·공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은 당연히 도입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는 예를 들어, 거버넌스 부분에 부피가 큰 기존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가치와 사회적혁신을 지향하는 작은 부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더라도 이미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차별을 주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거버넌스 참여 부분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기본법 내에서 분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상호 협력·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런 부분은 당사자분들과 토론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토론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뒷부분에서 질문해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기본법이 아닌 사회적경제통합법의 위상에서 기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추상화된 수준에서 연구자들이 경제원리들을 반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개별법을 놔두고 발전시키면서 기본 가치를 담은 기본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전제처럼 되어버리니 오해가 존재했던 것 같다.

서울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를 만드는 데에 9개월이 소요됐다. 기본조례의 필요 여부부터 기본조례로 갈 것인지, 통합조례로서 기존의 개별조례를 다 없애고 완전히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사실 질문 주셨던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나 안행부에서 주민참여 지역재생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토대로 지역중심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과연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런데 이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전국순회 공청회 과정에 통합입법제에 관해서 민간차원의 역제안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투자에서 공개석상에서의 서울시 사회적경제기금을 평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주셨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울에서 현장과 여러 평가들이 있었고, 한국사회투자가 전국최초로 그러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선도 사례는 사실 그 부분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애초에 구상했던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토론하고, 그런 경험들까지가 공유되어야 새로운 제도 안에서 이것이 복제확산 모델이 될 때,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에 기금운용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기여도가 없는 기금이 정부출연기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결국 그러한 기금 기여자들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100%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기본법에 의해서 설계되는 기금은 우리(당사자)의 책임(기금 출연 기여)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금에는 당사자의 출연 가능성에 한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원(당사자지자체정부 등의 출연)이 복합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부 출연금으로만 의존해가는 것은 절대 낙관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 전국의 마을기업에 대한 안행부의 선정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도에서 올라간 마을기업 리스트 중에 90%가 선정이 됐다면, 올해는 서울이 60%, 광주 50%, 대구는 90%가 선정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까지 정칙적 지역차별성에 대한 얘기들이 농담처럼 흘러나온다.

지금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조금 전 우려했던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기금 구성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한국사회 안에서 자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양한 자원의 소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과연 필요도가 높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보충성의 원리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법에서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기본법의 취지가 아닌가 한다.

강원 공청회 토론

- 원응호 (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 이경화 (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 조경자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상임이사) - 최중원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 사무처장)

<지정토론 1>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공청회 토론문

원응호(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1. 법의 목적과 방향

본 법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핵심 과제로 상정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조성에 있어 각 주체들의 입장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

분명한 것은 생태계는 인위적인 것을 가급적 축소하고 생태계 내에서의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할 것임.

생태계 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행해지는 인적·자원의 인위적 통합은 행정의 관리편의성 또는 용이성과 일률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지원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할 것임.

2.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제한 바와 같이 다양성,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인위적 통합이 아닌 각 영역 간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한 ‘자활사업’ 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통합을 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음.

‘시장지배사업자’ 인 농·수·축·임협의 참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굳이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과연 이들 조직이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화될 수 있는지도 의문임. 반면에 사회적경제영역과 근접해 있는 ‘생협’ 의 배제는 이치에 맞지 않음.

3. 각 영역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칸막이 해소가 시급

통합된 운영체제로 과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의문임.

오히려 각 영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살리도록 하면서 연계와 협력을 통한 협업과 가치 및 자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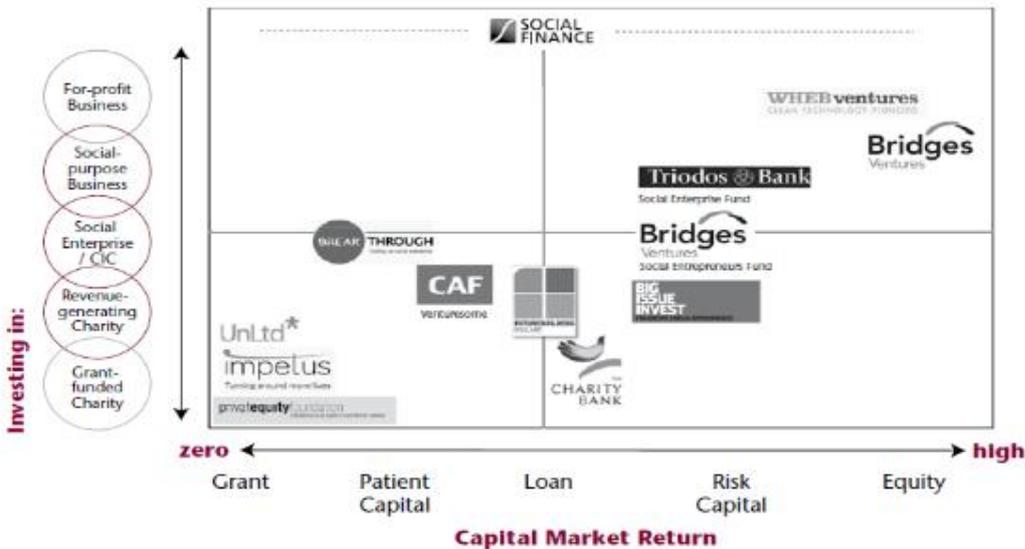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협력과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이 시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무조건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태계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관리와 통제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4.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기금은 관련법에 의해 여전히 용자에 국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 기금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펀딩, 사회혁신채권, 그 외 기업들의 가치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제도, 사회적환경 조성이 시급함.

<참고> 영국의 다양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또한 영국은 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Big Society Capital을 조성했지만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첫째, 사회혁신투자가 핵심
- 둘째, 정부로부터 반독립적 운영구조와 중립적 운영시스템
- 셋째, 긴 시간에 걸쳐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임

따라서 영국의 BSC와 같이 좀 더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금융 조성이 필요하다고 봄.

<지정토론 2>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공청회 토론문

이경화(강릉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1. 입법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여부 및 <사회적 경제>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의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시기적 적절성 여부 등

→ 강원도의 경우는 도청 內 <사회적 경제과>가 신설되어 <사회적 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큰 축으로 기획·행정·사업 활성화 지원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이에 타당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 관련 상위법을 통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등>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함.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행·재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를 전체화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금년 내에 합의되길 바람.

2.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농·축·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포함 여부, 새누리당안의 자활센터 포함 등의 여부 등.

→ 양 당의 안 중, 제1조(목적) 부분에서

* [새누리당 안] : . .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 . .

* [새정치연합 안] : (설립·경영의 지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재 <사회적 기업>은 <지원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는 <육성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음.

[참고] <협동조합>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차이’ 와 ‘다름’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사회적 기업을 ‘지원’ 하고 ‘육성’
자주·자립·자치적	규제와 감독

→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기대해서는 안 됨. 혹자는 <지원과 육성> 정책이 없으면 누가 ‘협동조합 기업’ 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지원과 육성 정책>이 없어서, 협동조합을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인 것임.

3. <사회적 경제> 주체 조직별 입장(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당사자 조직의 입장

→ <사회적 기업>의 입장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은 긍정적으로 봄. 하지만 <예비>에서 <인증>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재정적(매출 등) 성과 측정 등이 객관적이지 못함. 이 문제는 기본법 제정 이후 별도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어 완화되고, 정량적 또는 정성적

성과 측정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협동조합>의 입장

<협동조합>도 <기업>임. 그래서 <협동조합 기업>이라고 함.

- ‘협동조합’ 을 ‘기업’ 으로 생각하지 않는 몇몇 기관 등

- “정부가 2016년까지 협동조합 관련 취업자 수, 5만명 늘리기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 세계 금융 지원 등”. 그런데 현실은? 국내 각종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 <협동조합>이 기업 운영 자금 등에 대한 문의를 하면,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사례가 全無한 관계로 어렵다고 하며, 정작 보증 기관 자체 매뉴얼에도 <협동조합>은 목록에도 없음.

4. 기본법의 역할

: 기본법의 역할을 넘어 실행법의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 현재 양 당의 <안>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짐.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범주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범주 내에서 합의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경제 기업들, 즉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위해 <경제 행위 : 고용창출,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하에 기본법에 명시된 “지원과 육성” 등의 실행법(관리·감독 등)으로서의 위상 정립.

5. 기본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의 기간 단위, 수립 주체, 기본 계획 내용 구성 등 → 기본법 이후 논의

6. <사회적경제위원회>(거버넌스) : 위원회 구성(민간 비율, 위원장 등), 위원회의 역할, 거버넌스 체계 → 기본법 이후 논의

7. <사회적경제원>

: <사회적경제원>의 역할(연구사업, 진흥사업, 관리·감독) 범위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는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는지? 기존의 진흥원을 확대, 재편성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별도 기관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8.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우선 구매 대상

→ 현재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한 나름의 <구매 실적 통계> 등으로 정량화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낮음.

양 당의 <입법안>에는 공공 기관별 총 구매액의 5/100의 범위로 제안했는데, 이를 좀더 확대하여 <10/100>으로 해야 만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가치 또는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다양하고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봄.

9. <사회적 금융>

: 기금 운영·관리 주체, 손실보상,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여부, 기금의 성격,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한국사회적기업중앙회+함께일하는재단+희망씨앗)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무이자, 대출 등)/함께 일하는 재단> 등이 운영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 경제> 범주 내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의 <기업 운영 자금 지원> 등의 법적 시스템이 필요함.

<지정토론 3>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공청회 토론문

조경자(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상임이사)

1. 들어가며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을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 주체 조직별 입장을 듣는 오늘의 공청회 토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아직 강원도에는 협동조합 당사자 연합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춘천지역의 경우 10여개 협동조합이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연합조직의 성격은 아니어서, 본 토론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협동조합 조직을 대변한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인의 생각만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본 발제문 입법 쟁점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법 역할과 제정 목적, 조직의 정의 및 범위 등 다루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며,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포함시켜 실행법 역할을 함으로써 개별 정책의 다양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 특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토론문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고민하면서, 평소애 느끼고 있던 부분을 기본법 제정에 덧붙여 나누고자 합니다.

2. 사회적경제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다

- 이번 공청회 참여를 요청받으면서 들었던 문제의식과 궁금함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인가?
무엇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인가?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장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였습니다.
- 각 정당에서 기본법이 의원발의 되고(준비중이거나) 연내 입법 추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의 적절성 및 기본법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재 상황의 긍정적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과 궁금함이 있습니다.
-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 되면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강원도에도 2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춘천지역에도 4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춘천지역 협동조합 70%이상이 사업자협동조합이고, 이는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을 통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생겨났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설립신고는 마쳤으며, 사업은 개시하지 않는 협동조합들... 이들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물음표입니다. 또한,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 해볼까? 무슨 사업아이템으로 할까?".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필요와 열망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하는 협동조합 기본이 우리에게서 형성되어있지 못한 것이고, 이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 하에 성장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이자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 옛날 유럽에서 ‘기업농에 의해 생산기반을 잃게 되는 소농과 해고와 실직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호혜적인 활동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발제문 인용) 협동조합, 공제회,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사회적경제를 형성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문제(빈곤, 실업, 불평등의 문제 등등)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다양한 실천의 경험들을 통하여 호혜와 연대의 경제, 타자와 공존하는 경제, 사회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진정한 실질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몸에 내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회적경제가 사회와 분리된 채 지원과 관리의 정책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사회적경제는 새로움이며 대안이어야 하고, 우리가 그 사회적경제 안에서 살아야하며, 더욱 더 많은 이들이 사회적경제 안에서 살아가도록 문화로써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본법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있지 않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사회적경제와 교육

- 협동조합에서 교육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모인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결의와 참여의 정도가 협동조합의 성공의 열쇠이고, 참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드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 조직을 만나다보면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 호혜와 협동의 문화가 사회에서 성숙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학교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로 접하고 협동의 원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체형성을 위한 교육, 유·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인식확산 교육, 공무원 교육 등 사회적경제 교육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시 사회적경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당사자 조직의 필요를 모아 나가자 - 광역·기초단위 민간 네트워크에 힘을

-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조직의 기본원칙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법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계기로 당사자 조직들의 자기점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혁신을 이루고 공동체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런 다음, 지역 안에서 당사자 조직들이 모여 함께 협력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필요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민간 자체의 연대활동 강화와 상호부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적, 교육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5. 마치며

- 부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정토론 4>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대응 공청회 토론문

최중원(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 사무처장)

마을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보화 마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안전행 정부는 마을기업 사업에 대하여 기본법 혹은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요구를 하여 마을기업이 들어간 사례만 존재한다. 지난 대선 전에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서명 요구가 있어 서명을 했으나, 특정 대선캠프의 위촉장으로 둔갑되어 날아왔다. 그러한 식으로 이용만 당하고 법안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생기면서 마을기업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지리란 기대를 했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위주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타까웠다. 위원회의 구성 등 거버넌스의 체계에서도 안전행 정부는 빠져있다. 거버넌스에서도 제외되었는데 마을기업이 왜 들어간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것은 결국 구색을 맞추기 위할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기본법이 아닌 특정 주체들을 위한 기본법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왜 제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부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 때문에 만든다고 하지만, 농민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농협이 농민과 농산물 가격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됐듯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면 단시간에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 단위별 토론과 종합적 토론, 지역단위별 토론을 거친 후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야 한다. 토론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포함되지만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은 제외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농협, 수협, 임협의 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이것을 사회적경제로 넣기에 부적절하며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귀족 사회적경제라는 또 다른 분리·분열 등의 양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를 일컫는 주체는 천대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거대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에 속한다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견 제시를 마친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된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의 변화와 전망
 2. 사회적경제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경제 분야별·업종별 모범적 사례발굴 및 확산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 촉진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설립요건·설립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
 6.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7.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8.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관료·연구개발 등 지원제도를 연계·통합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9.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용방안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11.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통합방향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역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에 관한 계획과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획재정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 평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및 관련된 예산 등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심의
6.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둔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조직 협의회)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3.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5.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참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6.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9. 사회적경제조직 판로개척 지원
 10.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국제교류 협력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 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활동 지원
 12.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제2조 제3호 “가” 목으로부터 “마” 목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경제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⑨ 경제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원을 지도·감독하며, 경제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제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경제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 등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의 절차, 수행사업의 범위, 평가의 방법,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3. 정부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4.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사회적경제 발전활동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사회적경제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적경제의 날 이전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조직 또는 사업연합, 각종 제휴활동, 협의체 구축 등을 적극 촉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협동조합 간 협력의 촉진)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로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국제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30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 등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1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32조(벌칙) 제15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과태료) 제15조제13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2항 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제원의 설립) 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하여 제15조에 따른 경제원으로 한다.
- 제3조(경제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경제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경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경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경제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경제원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최초의 임원 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경제원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설립위원회는 경제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경제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경제원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경제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명의를 경제원 설립과 동시에 경제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경제원이 행하였거나 경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⑤ 경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경제원의 직원으로 본다.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에 대하여 제1항으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앙자활센터 직원의 임용기준은 그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설립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로의 통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3를 삭제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지역사회 자활촉진사업의 위탁)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를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 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원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 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역주민 단체”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으로 한다.

-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을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으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항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2항(농협경제지주회사)와 제134조제3항(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2항(중앙회 출자회사)과 제138조제3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은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

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 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 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 법의 제3조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이 법의 제3조4호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이 법의 제3조5호의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

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마련과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 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10.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관료·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1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제7조에 다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 8. 시·도별 자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시·도별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사항
 - 11.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년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시·도기본계획과 시·도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①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 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협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 2.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 5. 시도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 6.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추진체계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조직간, 분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 9.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10.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 14.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15.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16.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전에 대한 검토와 조치
- 18.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등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중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약간명

-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

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항에 다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⑧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구성·운영·예산 및 순차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넘도록 하며 실무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한다.

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

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분야를 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등)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하 “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개발원” 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개발원” 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개발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 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 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 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개발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 제7호 및 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조성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
8.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 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개발원” 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⑧ “개발원”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⑨ “개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⑩ “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원 “ 병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⑬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 ‘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탁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의 출자·용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용자, 온랜딩, 용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용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용자 사업
 -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 5. 사회적경제 투용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 7. 기금의 운용수익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용자 등 금융지원사업
-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기금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구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3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 평가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교육·훈련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 학생 및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또는 사업연합,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의 연대조직 구축
2.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이 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간에 또는 동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간에 지역별, 부문별, 전국단위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정보교류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

5.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6.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및 협업화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청년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혁신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사회적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등의 정책적·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청년의 사회적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국회보고등)

-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과 지역·부문별·전국 총괄 추진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지역 추진계획과 이행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국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46조(벌칙) 제23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제23조 14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원의 설립 및 준비와 경과조치) ①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법 제23조에 따른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으로 통합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개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는 ‘개발원’의 총괄부서 역할을 하며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한 구매계획”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8.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9.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10.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를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업무위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제6호의 사업중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사회적경

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및 동법 제24조에 따른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주민 단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2조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사회적경제기본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